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 의무사항 안내

1. 변경신고 의무

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나. 변경사항은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함
다.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인정 취소

-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협회장이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유형, 직원현황, 건물형태(면적)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연구개발활동 보고 의무

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함(별도 조사표에 의해 매년 지정된 기간에 조사됨)

나.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인정이 취소됨

3. 협회장이 확인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변경신고시 제출한 서류(사본)

다.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사본)

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사본)

바.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 연구일지, 연구노트, 특허출원등록 관련자료, 내부보고서 등
(연구노트 참고 사이트 www.e-note.or.kr)

※ 현지확인인 사전 통보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적/물적요건 등 인정기준 충족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